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호

의 안 명

대 상 기 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의결연월일 2014. 12. 8.

주 문

‘범칙금(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관련 신용카드 납부 등 편의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 국민안전처장,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2월 8일

위원장	이 성 보	_____
위 원	김 인 수	_____
위 원	곽 진 영	_____
위 원	홍 성 칠	_____
위 원	이 영 구	_____
위 원	유 재 풍	_____
위 원	이 학 수	_____
위 원	노 재 석	_____
위 원	최 학 균	_____
위 원	박 창 수	_____
위 원	권 태 성	_____
위 원	정 갑 생	_____
위 원	양 재 영	_____
위 원	이 현 수	_____
위 원	김 종 보	_____

< 별지 >



범칙금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관련 신용카드 납부 등 편의성 제고 방안

2014. 1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순서

I. 추진배경	1
II. 일반현황	2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8
2. 범칙금 조회시스템 구축	10
3. 통합납부 방식 도입을 통한 납부 편의 제고	11
IV. 조치사항	12
[붙임1] 각국의 교통범칙금 납부방식 현황	13

I

추진 배경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137번 :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 국정과제 134번 :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현금거래 관행 개선, 세수증대,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간의 조세부담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제도를 도입

※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998년 약 63조 5,500억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약 493조 8,300억원으로 증가

○ 이후 납세자의 세금 납부 편의,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07년)·지방세('10년) 납부 제도 도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07.12.31), 「지방세기본법」 제정('10.3.31)

※ 국고금 중 국세·관세·경찰청 과태료·법원 인지대는 신용카드 납부

○ 그 외 전기요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공분야도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도입·운영

□ 그러나 교통범칙금, 경범죄 범칙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지 않아 납부 불편 및 체납 시 불이익

※ 운전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업자의 경우 교통범칙금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로 생계 위협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건수는 '13년 70,289건)

□ 따라서 범칙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서민·영세업자 등을 보호하고 납부 시 선택권의 다양성 확보 필요

○ 또한 범칙금 납입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 구축 및 금융결제원의 통합납부 서비스(인터넷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로 납부자의 납부 편의성 증대

II

일반현황

1. 범칙금 제도 및 부과 현황

- ☑ 「도로교통법」상 교통의무 위반 등과 「경범죄처벌법」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

□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제도 및 부과 현황

- (제도연혁) 1970년대에 자동차 보유가 급증하고 도로교통사범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종전에 즉결심판에 의하여 처리하던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사범에 대해 통고처분(범칙금 부과¹⁾)제도 도입

※ 통고처분은 원래 조세법 등 국가의 재정작용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신속·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한 재정수입의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도입된 제도이나, 그후 출입국관리사범,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낮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교통사범과 경범죄까지 적용하여 비 범죄화를 추구 (벌금, 범칙금, 과태료 비교는 붙임4 참조)

- (절차·내용) 「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등에 대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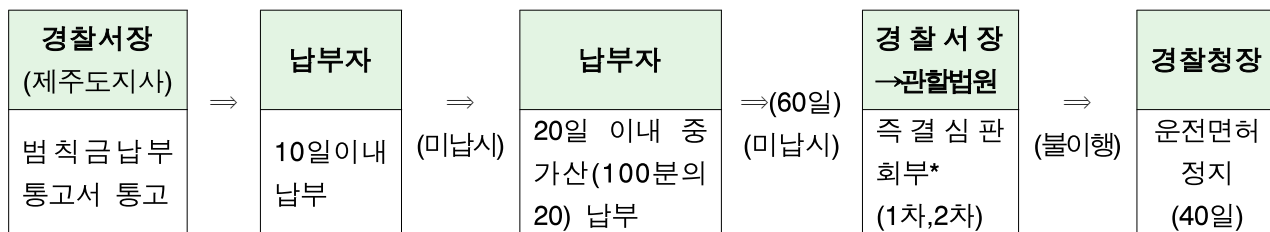
-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내에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 효력을 일정기간(40일) 정지

- 범칙금과 달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에 의거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 (과태료 부과대상) 운전면허 갱신 위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 매는 것 위반,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 등

1)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특수절차인 통고처분에 의하는 경우를 범칙금으로 부르고 있다고 볼 때, 기본적으로는 범칙금도 형사제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범칙금은 전형적인 형벌과는 구별되는데, 범칙금이 비 범죄화에 따른 ‘행정질서벌화’를 나타내는 제재수단(경미한 법익침해에 부과, 행정기관이 1차적으로 범칙금 부과, 사후제재 및 행정의무 이행 확보 등)이기 때문임.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제3의 행정제재 수단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임. 일본의 경우도 교통범칙금을 제재금의 성격으로 보고 있음 (출처 : 법제처)

< 교통법칙금 부과·징수 절차 >



*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하더라도 통고받은 법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음

< 교통법칙금 부과 대상 >

- ☑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및 별표9 (구체적 내용은 붙임1과 붙임2 참조)
- 속도위반,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승차 인원 초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위반,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급발진, 끼어들기 금지 위반, 서행의무 위반, 차도 통행 등

- (부과현황) '13년도에 2,885,134건, 105,487백만원을 부과하였고 부과액 순으로는 기타가 가장 많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순임

< 「도로교통법」 위반 법칙금 부과 현황 >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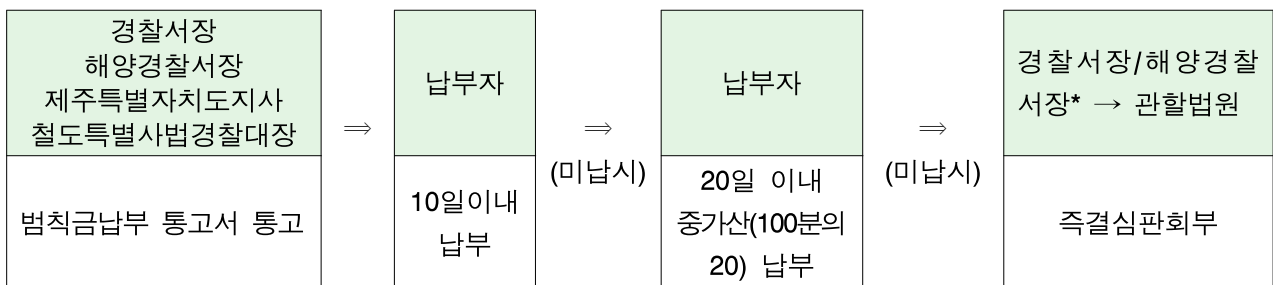
구분	전체		신호위반		안전띠미착용		교차로통행 방법위반		기타 (속도위반, 횡단방해, 승차인원 초과 등)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09년	4,104,769	145,598	624,790	37,400	645,737	19,356	40,934	1,663	2,793,308	87,180
'10년	4,505,662	155,423	553,581	33,101	849,070	25,448	167,426	6,789	2,935,585	90,085
'11년	2,110,526	72,993	268,780	16,282	433,240	12,987	68,518	2,793	1,339,988	40,931
'12년	1,750,059	61,952	267,702	16,044	408,764	12,253	47,881	1,954	1,025,712	31,701
'13년	2,885,134	105,487	419,647	25,573	939,864	28,178	152,156	6,175	1,373,467	45,561

※ 부과 후 체납 시 10일이 지나면 20%, 20일이 지나면 50%의 가산금 부과 (위반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법칙금 납부)

□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제도 및 부과 현황

- (제도연혁)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한 치안 확보를 위해 1954년 「경범죄처벌법」이 제정²⁾되었고, 이후 개정 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름
- (절차·내용)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물품강매, 광고물 무단 부착 등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
 -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에는 즉결심판³⁾에 회부

<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부과·징수 절차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금 미납 시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 이관·처리

< 범칙금 부과 대상 >

☑ 「경범죄처벌법시행령」 별표 (구체적 사항은 붙임3 참조)

- 빈집 침입, 폭행 등 예비, 물품강매·호객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노상방뇨, 구걸행위, 불안감 조성, 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 과도노출,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업무방해 등

2) 1954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1953년 제정된 「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비교적 사소한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범죄화의 영역과 비 범죄화의 영역 사이에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3)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로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며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음

- (부과현황) '13년에 58,826건에 2,364백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세부적으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은 55,455건에 2,322백만원을 차지

<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부과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 계	86,820	3,027	81,806	2,708	27,327	1,071	58,826	2,364
경찰청 (부과액 기준)	86,593	3,022	81,529	2,702	27,260	1,069	55,455	2,322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⁴⁾ *	-	-	-	-	-	-	2,239	39
국민안전처	227	5	277	6	67	2	1,132	3

* '13.3월부터 국토교통부소속의 철도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위반자의 통고처분 대상 범칙행위(47개)에 대해 범칙금 부과하며, 2차에 걸쳐 납부를 통보하고 미납 시 법원에 즉결심판 회부

< 경찰청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세부 부과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위반 유형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부과	95,212	3,089	86,593	3,022	81,529	2,702	27,260	1,069	55,455	2,322
	징수	92,467	3,437	68,390	2,696	67,856	2,550	24,369	1,103	41,361	1,901
음주 소란	부과	17,864	893	20,268	1,013	15,575	779	8,879	444	10,163	508
	징수	12,310	773	12,775	788	10,302	647	6,093	389	7,026	450
인근 소란	부과	24,793	744	25,267	758	18,648	559	5,593	168	6,194	186
	징수	20,876	744	19,879	686	15,768	551	5,351	195	5,802	209
오물 투기	부과	16,166	492	15,039	459	17,410	528	4,311	133	18,298	554
	징수	18,366	690	13,003	468	15,463	542	4,608	173	14,831	507
불안감 조성	부과	4,058	203	4,732	237	3,827	191	2,778	139	2,666	133
	징수	2,814	173	2,983	178	2,504	151	1,932	116	1,832	113
기타	부과	32,331	757	21,287	555	26,069	645	5,699	185	18,134	941
	징수	38,101	1,057	19,750	576	23,819	659	6,385	230	11,870	622

4)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963년 5월1일 교통부 법무관실公安계로 출발한 후, 현재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대전에 철도경찰 본대를 두고 4개(서울, 부산, 광주, 영주) 지방철도경찰대를 설치·운영중이며, 주요기능으로는 열차 및 철도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전국 주요역에 철도경찰공무원을 배치, 치안 활동을 담당하고 있음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부과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위반유형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범칙금	소계									2,239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555	8
	쓰레기 등 투기									474	10
	음주소란									364	7
	인근소란									229	3
	불안감조성									170	2
	구걸행위등									148	1
	무단출입									132	2
	기타									167	6

< 국민안전처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부과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72	16	227	5	277	6	67	2	1,132	3

※ 국민안전처는 범칙금의 세부 부과현황 통계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총계만 제시하며, 바다에 쓰레기 무단투기, 선박 등 무단출입, 임검 시 소란행위 등 순으로 많음

2. 범칙금 조회시스템 및 통합납부 서비스 (인터넷지로) 현황

□ (경찰청) 범칙금 미납 및 기 납부 내역 조회를 위해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www.efine.go.kr)' 운영

○ 다만, 현재는 조회만 이루어지고 납부는 은행방문 창구납부,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로 납부

※ 조회·납부 시스템에서 무인단속 내역, 운전면허 조회, 교통사고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 및 업무 처리 기능

- (국민안전처) 범칙금 납부 조회 시스템은 미 구축 상태
- (국토교통부) 범칙금·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해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 조회시스템(www.rfine.go.kr)’ 운영
- 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계좌를 통해 CD/ATM,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나, 인터넷지로 납부는 불가
 - ※ 조회시스템은 범칙금 납부방법, 범칙금액, 범칙금 조회, 과태료 납부방법, 부과기준, 이의제기, 과태료 조회 등으로 구성

금융결제원의 통합납부 서비스(인터넷지로) 개요

□ 도입취지

- 각종 지로요금, 공과금, 국세 및 지방세입금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지로납부 코너), 징수기관 웹사이트)이나 각종 전자적 매체(CD/ATM, 유무선전화기 등)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공동으로 구축한 전자납부 서비스
- ※ '99.10, 금융결제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자지로 다양화」 추진

□ 참여기관

구 분		내 용
참가기관		국내 모든은행, 우체국,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징수 기관	정부기관	국세청, 경찰청, 특허청 등 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전력,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주)KT
	일반기관	도시가스사 및 이동통신사 등 지로이용기관

[illegible]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실태 및 문제점]

- ☐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정책으로 인해 민간영역 뿐 아니라 국세·관세·지방세·공공요금 분야로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
- ☐ 그러나 여전히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시 범칙금은 신용카드 납부 불가
 -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0. 6. 13.)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행성게임물의 이용대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 ('14. 8. 20. 법제처 질의회신)
- ☐ 이로 인해 체납 시 불필요한 가산금 및 증가산금 부과로 국민 부담 및 민원 발생,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등 불이익 발생
 - 특히 생계형 택시 사업자, 트럭 운전자 등의 경우 생계로 바빠 납입 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 자금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을 경우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로 경제적 궁핍 초래 우려

※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 '11년 98,028건, '12년 40,507건, '13년 70,289건

민원사례

- 과태료는 가능한데 교통범칙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너무 불편 (국민신문고 민원, '13. 3월)
- 교통범칙금 미납 사유로 즉결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수치를 주는 일이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면 생업을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하기 때문에 개선 필요 (국민신문고 민원, '13. 10월)
- 교통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억울함.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국민신문고 민원, '14. 3월)

[개선방안]

□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로 편의 증진

-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하여 가산금·증가산금 부과를 방지
- 또한 체납에 따른 즉결심판 회부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 일시적인 현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및 운전면허 정지 불이익 방지
 - ※ 벌금의 경우 분할납부(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등) 및 2회 연장제도(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제도를 두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 ※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 각국의 경우 온라인, 우편환, 은행납부,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구체적 정보는 불임1 참조)

< 참고 : 신용카드 납부 관련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규정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법 제46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1천만원 이하의 세액은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세액과 가산세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③ 삭제 ④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범칙금 조회시스템 구축

[실태 및 문제점]

- 국민안전처의 경우 범칙금 납부 내역 조회 시스템이 없어 납부자가 범칙금 납부 여부 및 금액 등을 일일이 문의해야 하고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납입해야 하는 등 불편

※ 경찰청 및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경우 범칙금·과태료 미납 및 납부 조회 시스템을 구축·운영

< 경찰청, 국토교통부 범칙금 납부조회 시스템 구성 >

경찰청(www.efine.go.kr)	국토교통부(www.rfine.go.kr)
• 미납내역 조회 (범칙금, 과태료) • 기 납부내역 조회 (범칙금, 과태료) • 무인단속 내역 • 운전면허 조회 • 교통사고확인원 • 운전경력증명서	• 범칙금 납부방법 • 범칙금액 • 범칙금 조회 • 과태료 납부방법 • 부과기준 • 이의제기 등
	

[개선방안]

-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같이 국민안전처도 범칙금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부 금액, 납부 여부 등 관련자료 조회, 정보 등 제공을 통한 납부 편의 제고

3. 통합납부 방식 도입을 통한 납부 편의 제고

[실태 및 문제점]

- (국토교통부) 고지서 없이 납부전용계좌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토록 개선하였으나, 금융결제원의 통합납부 서비스(인터넷 지로)는 미 도입 상태로 범칙금 납부 시 불편

* 열차 내 의무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의 경우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를 개설하여 납부자가 해당계좌에 '송금'하는 방식), 계좌이체 방식 활용

※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활용 시 범칙금 납부 뿐만 아니라 국세·지방세 등도 조회·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국민안전처) 범칙금 납부는 은행방문 창구납부만 가능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 범칙금·과태료 조회시스템과 금융결제원의 통합납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자납부가 가능토록 개선
- (국민안전처) 범칙금 조회·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결제원의 통합납부서비스(인터넷지로, www.giro.or.kr)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

IV

조치사항

1. 대상기관 : 3개기관

○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2.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분	조치사항	관계법령	소관 기관	조치 기한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 시행령, 「경범죄처벌법」 및 같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17.12
범칙금 조회시스템 구축	범칙금조회 시스템 구축	-	국민안전처	'16.12
통합납부 방식 도입을 통한 납부 편의 제고	금융결제원의 통합납부 시스템과 연계방안 마련	-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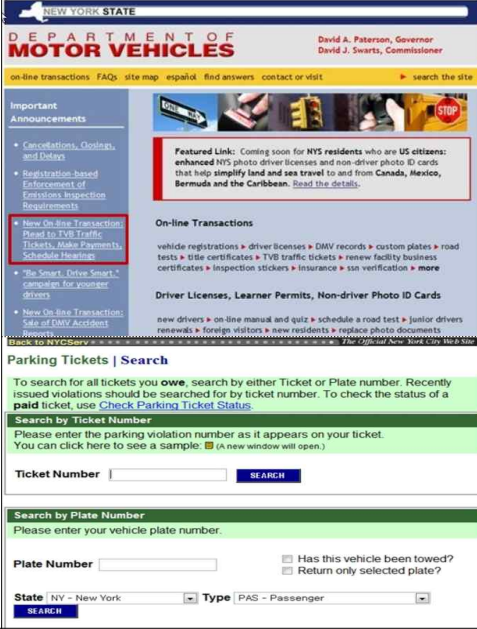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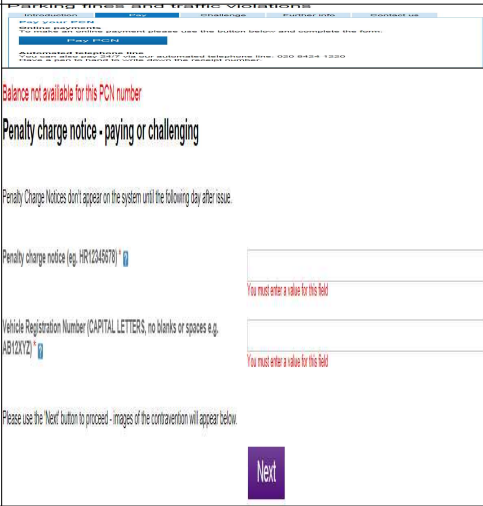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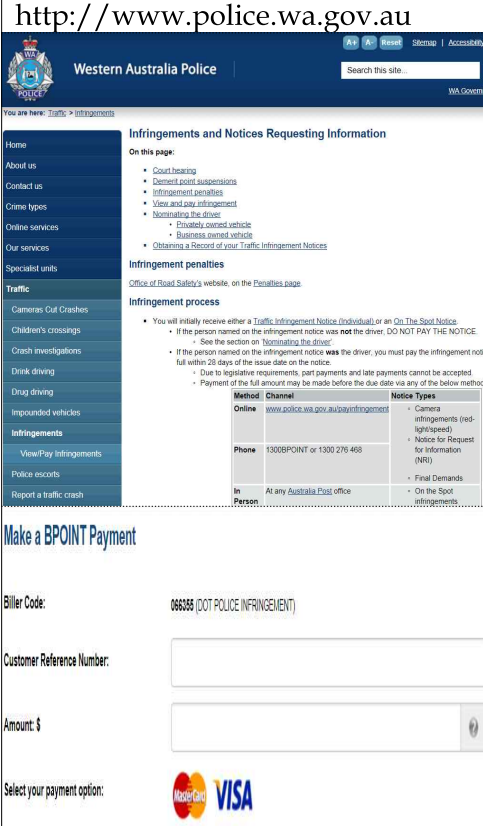
각국의 교통범칙금 납부방식 현황

- 납부방식은 신용카드, 온라인, 우편환(money order), 은행납부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이 보다 활성화

※ 우편납부의 경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법원 이송 처리 등으로 인해 온라인상의 신용카드 납부 방식 선호

- 납부자가 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제 시 2~3% 정도의 수수료 부담

국가별	납부절차	납부방식	사이트
미국	· 위반티켓 발부 · 위반사항에 대해 15일의 소명 기간 부여 · 미납 시 법원에 통보 · 처리	• credit card (온라인사이트) ※연방정부 홈페이지에 각 주 정부 사이트 등재 ※납부자가 2%의 수수료 부담 • 우편납부	http://www.dmvusa.com(연방) http://www.dmv.ny.gov (뉴욕) 
영국	· 위반티켓 발부 · 28일 이내에 납부 · 미납 시 법원에 통보 · 처리	• credit card (온라인사이트, 전화) ※영국의 경우 온라인 벌금 통합납부시스템 운영	http://www.gov.uk Parking fines and traffic violations 

국가별	납부절차	납부방식	사이트
			
호주	- 위반티켓 발부 - 미납 시 법원에 통보 · 처리 ※주(state)별로 관할 구역이 나뉘어 있음	- credit card (온라인사이트/ 전화) - 우편납부 - 직접납부 - 은행납부	
뉴질랜드	- 위반티켓 발부 - 미납부 시 수수료 (fee)에서 벌금(fine)으로 전환되어 법원에서 처리 ※할부납부는 안됨	- credit card (온라인사이트) ※납부자가 3%의 수수료 부담 - 우편납부 - 직접납부 - 은행납부	

국가별	납부절차	납부방식	사이트
			 You are paying a Police Infringement Notice * Indicates a mandatory field Notice Number * view samples * Notice number is hidden to enable accurate reconfirmation below. Re-type Notice Number * Full Name on Notice * Payment Amount NZD\$ * (You must pay the full fee) In addition to your payment a convenience fee of 3% is charged by our bank Westpac New Zealand Limited. This is calculated on the next screen Cancel and return to Police website Continue